

공공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제정 2013. 9. 23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15. 3. 06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개정 2024. 4. 09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위탁하는 공공저작권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저작물의 원활한 민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저작권을 신탁 받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수탁자” 라 한다) 사이의 공공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 범위)

-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취득하게 될 공공저작권 중 이 약관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공공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이하 “신탁저작권” 이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관리하게 한다.
- ② 수탁자는 「저작권법」상의 권리범위 내에서 신탁저작권을 관리한다.

제3조(저작권 보증)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보증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③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위탁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탁저작권 관리방법)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저작권을 양도,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신탁저작권의 이용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제3자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를 예방하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청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권리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저작권신탁관리시스템)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탁저작권 관련 정보(권리 정보, 저작물 소재정보 등)를 수집·활용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계약과 동시에 이를 허락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신탁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해지시점에 계약이 종료된다.

제7조(자유이용허락)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한 공공저작권에 대하여 위탁자가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하 “자유이용허락”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분배)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제2조에 속하는 신탁범위 내에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제9조(관리수수료) 위탁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신탁저작권 관리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공공저작권 관리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신탁관리 및 사용료 분배의 유보)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징수한 사용료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제3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권리의 귀속관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때
2. 신탁관리 하는 공공저작권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공공저작권이 없음 또는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유보 직전 분배시기까지 확정된 분배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등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위탁자의 의뢰로 수탁자가 공공저작권의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였을 때 소요되는 실비
2.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에 관한 업무수속에 필요한 비용
3.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위한 비용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공공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지요구(내용증명의 발송 포함),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그 청구액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위탁자 통지의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2. 위탁자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신탁저작물이나 신탁저작권의 종류,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의 저작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13조(권리의무 승계) ① 위탁자인 공공기관이 직제 개편, 합병 등을 이유로 신탁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탁저작권을 양수한 공공기관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자인 공공기관은 위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계약 해지 및 종료)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저작권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
2. 위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수탁자의 시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더 이상의 신탁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의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용료 미분배분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해지의 통지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 권리나 이용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4항에 의한 정산 이후에도 공공저작권 사용료가 계속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추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약관 개정) ①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공공저작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개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위탁자가 위 기간 동안 해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부속 계약) ① 이 약관에 있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 약관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약관 말미에 첨부된 부속계약서는 이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7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